

증권선물위원회

심 의·의 결

2021. 6. 16.

안건번호 2021 - 제 142호

안건명 甲과 乙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조치에 관한 건

조치대상자 甲, 乙

의결연월일 2021. 6. 16.

주 문

1. 증권선물위원회는 피조치자 甲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乙에 대하여 경고한다.

가. 과징금액 : 7,600,000원(甲)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조치자의 지위

甲과 乙은 일반 투자자로서 시장질서교란행위의 행위자에 해당하는 자임

나. 행위사실

甲은 2017.11월 경 모친인 丙(1차 수령자)으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음

2017.11.29. 甲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본 건 정보가 공개 되기 몇 시간 전 A사 주식 3,485주를 매수한 사실이 있음

甲과 乙은 2018.3월 경 모친인 丙(1차 수령자)으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전달 받은 사실이 있음

2018.3.5. 甲과 乙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본 건 정보가 공개되기 몇 시간 전 A사 주식 16,808주(甲), 3,250주(乙)를 매수한 사실이 있음

2.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7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은 “제174조 각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29조의2는 동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근거 조항>

◆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행위가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74조 각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轉得)한 자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가. 그 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그 정보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 제429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피조치자 행위의 위법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1항은 제174조 각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자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甲은 1차 수령자인 丙으로부터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도 정보를 전달 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7.11.29. 2018.3.5. 2차례에 걸쳐 동 정보가 공개되기 몇 시간 전 A사 주식 20,293주를 매수한 사실이 있음

乙은 1차 수령자인 丙으로부터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도 정보를 전달 받고, 2018.3.5. 이를 이용하여 동 정보가 공개되기 몇 시간 전 A사 주식 3,250주를 매수한 사실이 있음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甲과 乙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

3. 처 분

甲의 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동 법 시행령 제379조 및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 제2호 과징금부과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산정하고,

乙은 행위사실의 위법 정도 및 관련 사실 등을 감안하여 경고한다.

가. 과징금 산정기준

甲의 과징금은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 제2호 3.바.(1)에 따라 법 제178조의 2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 포함)으로 산정하여, 기준금액을 6,118,720원으로 함

나. 부과 비율의 산정

甲은 법 제178조의2 제1항 제1호의 가목에 해당되고 1차 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2차 수령자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 제2호 4.나.(3)에 근거하여 위반행위 중요도 '상'에 해당함

甲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 제2호 4.다.의 상향조정사유 또는 하향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별도의 조정을 거치지 않음

다. 부과 과징금의 결정

위반행위의 중요도가 '상'이고, 상향조정사유 또는 하향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 제2호 4.가.(4)에 따라 기준금액에 부과비율 100분의 125를 곱하고, 10만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피조치자 甲에게 7,6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4. 결론

피조치자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 법 제429조의2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1년 6월 16일